#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3.01.01] (일부개정) 2022.11.10 조례 제1155호

> 관리책임부서명 : 복지정책과 관리책임전화번호 : 610-4314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참전유공자"란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,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예우 및 지원대상)** 예우 및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부산광역시 수영구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. <개정 2015.9.23.> [제목개정 2015.9.23]

**제4조(지원사업)**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1.10>

- 1.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- 2.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인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에 따른 생계・주거・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생계지원을 위한 참전명 예수당 월 5만원 지급.
- 가. 삭제 <2022.11.10>
- 나. 삭제 <2022.11.10>
- 다. 삭제 <2022.11.10>
- 3.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[전문개정 2019.11.8]

제5조(지원방법 및 시기)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. <개정 2019.11.8, 2022.11.10>

-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3조를 따른다. <개정 2019.11.8>
- ③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11.8>
- ④ 참전명예수당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(사망, 전출 등)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. <신설 2019.11.8> [제목개정 2019.11.8]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1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 <제777호, 2015.9.23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의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### 부칙 <제955호, 2019.11.8.>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칙 <제1155호, 2022.11.10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중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.